

부산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합4589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260,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1)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C이고, 피고는 토목 및 건축 기초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의 발생

1) 원고는 2002. 5. 3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서구 F 외 3필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14층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02. 5. 27.부터 2002. 11. 30.까지, 공사대금은 1,15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609,000,000원은 위 신축될 아파트 중 4세대(H호, I호, J호, K호. 이하 '이 사건 대물아파트'라 한다)를 대물지급받기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E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물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C, L, M, N(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라 한다)을 각 수분양자로 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의 자금 대여 및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양도

1) 피고는 O 주식회사에 2003. 5. 27. 200,000,000원, 2003. 5. 28. 100,000,000원 등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03. 6. 29.로 정해 대여하였고, C은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은 2003. 5. 28.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D에 원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대물아파트의 수분양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3. 6. 7. E에 위 공사대금채권 및 수분양권을 D에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라. C의 D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양도 등

1) 이 사건 대물아파트는 2003. 11.경 E이 D 또는 원고의 동의 없이 P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5. 1. 27.경 P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06. 5. 23. ~ 6. 27. 모두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2) 이에 C은 2005년경 E 대표이사 Q을 배임죄로 고소하였다가 2005. 6. 28.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과정에서 E이 이 사건 아파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총 13세대(이하 '이 사건 합의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으로 설정된 AD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을 D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가 AD에서 D로 변경등기되었다.

3) C이 위 합의과정에서 E에 보낸 통고서에 'C이 개인사정에 따라 장기간 해외출장으로 인한 관리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양수 채권관리를 한시적으로 명의신탁하는 조건으로 채권양수인을 D 대표 B로 지정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마. D의 E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D은 2003. 11.경 E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40045호로 이 사건 대물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E에게 D 또는 M, N에 대하여 위 대물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 E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2) D은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05나10951호 사건의 계속 중 위 대물아파트가 임의경매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자 E에 대하여 위 대물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고, 위 항소심법원은 2006. 7. 28. 'E은 D에게 285,671,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D의 임의경매 및 공매절차에서의 배당

D은 200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아파트 6세대(S호, T호, AE호, AA호,

AB호, AC호)에 관한 임의경매 및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금원을 배당받았다(이하 원고가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순번	관련 절차	대상 목적 부동산	배당일	배당받은 금액
1	부산지방법원 AF 부동산임의경매	이 사건 아파트 AE호	2007. 10. 10.	2,267,610원
2	부산지방법원 AG 부동산임의경매	이 사건 아파트 S호	2010. 10. 18.	28,436,047원
3	부산서구청 AH	이 사건 아파트 T호	2011. 12. 28.	65,458,559원
4	부산서구청 AI	이 사건 아파트 AA호	2012. 1. 11.	71,071,239원
5	부산서구청 AJ	이 사건 아파트 AB호	2012. 1. 27.	46,656,730원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AK 부동산임의경매	이 사건 아파트 AC호	2018. 12. 27.	81,370,074원
합계				295,260,25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L은행, IBK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은 피고가 아닌 D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D를 통하여 위 근저당부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배당금 295,260,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D이 이 사건 대여금 이행 담보로 제공받은 것이고, 이 사건 배당금은 D이 이러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해 배당받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나)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5. 6. 28.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될 당시 E에 대하여 작성한 통고서에 ‘양수 채권관리를 한시적으로 명의신탁하는 조건으로 채권양수인을 D 대표 B로 지정통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및 D이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해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D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이행 담보로 이 사건 채권양도 목적물 중 이 사건 대물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체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D에게 공사대금채권 및 이 사건

대물아파트의 수분양권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D 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물아파트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고 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C이 E 대표이사 Q을 배임죄로 고소한 후 그 합의 과정에서 D에게 양도된 것인 점,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대물아파트가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점, D이 관련소송에서 'E은 D에게 285,671,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원고 등이 D에 위 대물아파트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담보를 제공한 적도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 목적물 중 위 대물아파트의 수분양권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③ '양수 채권관리를 한시적으로 명의신탁하는 조건으로 채권양수인을 D 대표 B로 지정통보한다'는 통고서는 원고가 E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로써 피고 또는 D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피고 또는 D이 그 의사표시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추심권한을 위임했다면 위 근저당권부채권이 양도된 2005년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까지 원고가 해당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위은숙, 판사 김현정

1) 원고는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는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21. 4. 28.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행한다.

2) D은 M, N이 E에 대하여 그 수분양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M과

N이 E에 대하여 가지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